

## 검 토 보 고

###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서울특별시
- 나. 의안번호: 제911호
- 다. 제출일자: 2023. 5. 30.
- 라. 회부일자: 2022. 6. 1.

### 2. 제안사유

-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2차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 심의에 따라,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사업비 증액 및 신규사업 편성(국제 기후테크 컨퍼런스 외 3건)을 위해 정책사업비를 118억 1천4백만원 증액하여 당초 대비 20% 초과 변경하고 예치금 118억 1천4백만원을 감액하여,
- 나. 정책사업비를 382억 8천2백만원, 예치금을 283억 8백만원으로 최종 변경하고자 함.

다. 수입계획 변경 없음

구 분	당 초(A)	변 경(B)	증 감(B-A)
계 (순수입)	66,594 (12,684)	66,594 (12,684)	- (-)
예치금 회수	41,910	41,910	-
예탁금 원금회수	12,000	12,000	-
융자금회수(이자포함)	4,563	4,563	-
이자수입	2,924	2,924	-
기타수입	5,197	5,197	-

라. 지출계획 변경내용: 정책사업비 158억원 증액, 예치금 158억원 감액

〈1차 변경〉\_예치금 39억 8천6백만원 감액

- “서울시청 본관 에너지효율화 사업” 18억원(신규)
- “기후위기 적응대책 아이디어 공모전” 7천만원(신규)
- “노후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 11억 5천만원(신규)
- “경로당 서울형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SEMS)” 5천만원(신규)
- “저비용·고효율 간편시공 실증사업 추진” 1억원(신규)
- “공동주택 전기설비안전진단 및 고효율 변압기 교체 지원사업” 2억 5천만원(신규)
-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 개최” 1억 3천4백만원(신규)
- “주민참여형 수요반응(DR) 시범사업” 1억원(신규)
- “난방취약주택 대상 난방효율개선지원단 운영” 8천만원(신규)
- “제로캠퍼스 조성 및 운영 지원” 1억 6천7백만원(신규)
- “자원순환 신기술 박람회 개최” 8천5백만원(신규)

〈2차 변경〉\_예치금 118억 1천4백만원 감액

-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100억원 증액(127억 5백만원→227억 5백만원)
- “국제 기후테크 컨퍼런스” 2억 9천만원(신규)
- “수성도료 전환장비 구매지원” 3억 2천만원(신규)
- “난방효율 개선사업” 8억 5천4백만원(신규)

- “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시범사업” 3억 5천만원(신규)

구 분		당 초 (A)	1차 변경	2차 변경 (B)	증 감 (C=B-A)	증감률 (C/A*100)
계 (순지출)		66,595 (22,487)	66,595 (26,473)	66,595 (38,287)	- (15,800)	0.0% (70.3%)
정책사업비 (기후변화 대응강화)	계	22,482	26,468	38,282	15,800	70.3%
	비용자성 사업비	17,684	17,684	27,684	10,000	56.5%
	용자성 사업비	4,798	8,784	10,598	5,800	120.9%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5	5	5	-	0%
재무활동	예치금	44,108	40,122	28,308	△15,800	△35.8%

※ 최종 의회 의결액(당초, 제315회 정례회)대비 정책사업비(기후변화대응강화) 20% 초과(70.3%)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가. 개요

-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변경안은 지출계획 중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사업 확대와 신규 사업 편성을 위해 정책사업비를 당초 예산 대비 70.3%인 118억 1천4백 만원을 증액<sup>1)</sup>하고, 동일 금액의 예치금을 감액하는 것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임.

####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영계획변경안(1,2차) 세부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당초	변경	증 감	
				증감액	비율
1차 변경	1 서울시청 본관 에너지 효율화 사업	-	1,800	1,800	-
	2 기후위기 적응대책 아이디어 공모전	-	70	70	-
	3 노후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	-	1,150	1,150	-
	4 경로당 서울형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	50	50	-
	5 저비용·고효율 간편시공 실증사업 추진	-	100	100	-
	6 공동주택 전기설비안전진단 및 고효율 변압기 교체 지원사업	-	250	250	-
	7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	-	134	134	-
	8 주민참여형 수요반응(DR) 시범사업	-	100	100	-
	9 난방 취약주택 대상 난방효율개선지원단 운영	-	80	80	-
	10 제로캠퍼스 조성 및 운영 지원	-	167	167	-
	11 자원순환 신기술 박람회 개최	-	85	85	-
2차 변경	12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12,000	22,000	10,000	82.5
	13 국제 기후테크 컨퍼런스	-	290	290	-
	14 수성도료 전환장비 구매지원	-	320	320	-
	15 난방 효율 개선 사업	-	854	854	-
	16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시범사업	-	350	350	-

1) 1차 변경: 정책사업비 39억 8천6백만원 증액(당초 금액 대비 17.7%, 2022년 2월 15일)

2차 변경: 정책사업비 118억 1천4백만원 증액(당초 금액 대비 52.5%, 2022년 5월 12일)

## 나. 검토의견

-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공급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0년부터 운용되고 있음.

동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 운용 수익금, 차입금, 출자 및 주식 배당금 및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 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연구·조사·기술 개발 사업, 관련 사업비 용자·지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교체사업,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장려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2항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20%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행정안전부의 예규인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sup>2)</sup>에 따르면 20% 초과 여부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액수를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음.

### 〈2023년 기후변화기금 변경 현황〉

구 분		당 초 (A)	1차 변경	2차 변경 (B)	증 감 (C=B-A)	증감률 (C/A*100)
계 (순지출)		66,595 (22,487)	66,595 (26,473)	66,595 (38,287)	- (15,800)	0.0% (70.3%)
정책사업비 (기후변화 대응강화)	계	22,482	26,468	38,282	15,800	<b>70.3%</b>
	비용자성 사업비	17,684	17,684	27,684	10,000	56.5%
	용자성 사업비	4,798	8,784	10,598	5,800	120.9%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5	5	5	-	0%
재무활동	예치금	44,108	40,122	28,308	△15,800	△35.8%

※ 최종 의회 의결액(당초, 제315회 정례회)대비 정책사업비(기후변화대응강화) 20% 초과(70.3%)

2) 행정안전부 예규 제219호, '22.7.22. 시행 p.293

- 본 변경안은 제315회 정례회에서 시의회가 승인한 정책사업비(224억 8천 2백만원) 대비 70.3%(158억원, 증액 1건, 신규 15건) 증액분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임.
-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은 시민들의 에너지효율화사업 참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8년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120억원) 대비 82.5%인 100억원을 증액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변경 사유로 4월 26일 기준 신청 건수(312건)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배 많을 뿐 아니라 본예산의 59%(71억 6천1백만원)가 지원 결정될 정도로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 점 등을 들고 있어,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다만, 동 사업은 전년도에도 비슷한 사유로 증액 변경을 한차례 실시하였지만, 최종 집행액은 계획변경 전 예산현액에도 미치지 못해 불필요한 계획변경이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세밀하고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잦은 계획 변경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2023년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신청 현황>

구 분	2023년						2022년					
	신청건수(건)			신청금액(백만원)			신청건수(건)			신청금액(백만원)		
	소계	주택	건물	소계	주택	건물	소계	주택	건물	소계	주택	건물
총 계							463	451	12	10,280	6,819	3,461
<b>4.26일 현재</b>	<b>312</b>	<b>303</b>	<b>9</b>	<b>7,061</b>	<b>4,196</b>	<b>2,865</b>	<b>34</b>	<b>32</b>	<b>2</b>	<b>445</b>	<b>395</b>	<b>50</b>
1차	30	29	1	731	421	310	3	3		32	32	
2차	20	19	1	281	228	53	3	3		34	34	
3차	32	30	2	450	395	55	7	7		83	83	
4차	49	49	0	691	691	0	4	4		67	67	
5차	55	53	2	832	760	72	6	4	2	98	48	50
6차	59	57	2	3,094	773	2,321	5	5		58	58	
7차	67	66	1	982	928	54	6	6		73	73	

- 신규사업 15건 중 “서울시청 본관 에너지효율화 사업”은 서울시청 본관 건물의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고자 에너지 소비량과 생산량의 실시간 수집·분석이 가능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이하 BEMS<sup>3)</sup>)의 설치와 고효율 지열 히트펌프로의 교체를 위해 18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임.

**<서울시청 본관 에너지효율화 사업 세부 산출 내역>**

과목구분	산출내역	
시설비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500,000,000원×1Set	= 500,000천원
	○ 지열히트펌프 교체 52,000,000원×25대	= 1,300,000천원
	증감사유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신규 설치	
	- 지열히트펌프 교체	

동 사업은 서울시청 본관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이 과도하다는 언론의 지적<sup>4)</sup> 등에 따라 수립된 「에너지 위기 대응 특별대책(’22.12월)」의 하나로 추진 하였음.

동 사업을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으로 편성한 사유로 특별대책 발표 시기가 본예산 편성 이후인 점과 동 사업이 (기후대응)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인 점을 들고 있는데, 언론 등의 지적에 신속하게 대응한 점은 바람 직하다 할 수 있으며 사업목적 자체에 대한 이견은 없음.

다만, (기후대응)기금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기금 규모상 서울시 공공기관 건물 전체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데, 동 사업은 서울시 본관 건물 담당 부서인 총무과에서 일반회계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좀 더 적절했을 것으로 판단됨.

3)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4) “공기관 에너지 과소비... 서울시청이 쓴 전기량, 런던시청의 2배”(조선일보, ’22.11.08.)

- “노후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5년 이상 노후주택 50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창호, LED 등) 공사비를 최대 5백만원(80% 이내)까지 지원하여 취약계층에 에너지비용 절감 및 건강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1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임.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서울시의 주거 여건을 고려해볼 때 동 사업의 취지나 내용에 대해 공감할 수 있으나, 사업 규모(10억원)에 비해 위원회 수당(3천만원)의 비율이 높은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서울시 내 대상 주택이 70만 가구<sup>5)</sup>에 달하는바, 관심이 있으나 정보의 부재로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가 요구될 것임.

**<노후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 사업 세부 산출 내역>**

과목구분	산출내역	
민간경상사업보조	○ 에너지효율화 공사비 보조금 2,000,000원×500가구	= 1,000,000천원
	증감사유	
	노후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공사비 보조(단독 최대 5백만원 공동 최대 3백만원)	
사무관리비	○ 사업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 90,000천원
	- 리플렛 제작: 10,000,000원×3회	=
	- 영상 제작, 방송 등: 30,000,000원×2회	=
	○ 보조금관리위원회 참석수당 200,000원×10명×15회	= 30,000천원
	증감사유	
신규사업 홍보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전산개발비	○ 온라인 지원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30,000,000원×1식	= 30,000천원
	증감사유	
	보조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운영할 전산시스템 제작 및 유지보수 용역	

5) 2022년 주택공시가격 현황 및 건축연도별 주택현황 자료를 토대로 추산(기후환경본부 내부자료)

- “저비용·고효율 간편시공 실증사업 추진” 사업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노후 주택 거주 저소득층의 에너지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창호에 단열덧 유리 또는 기밀 방풍재를 부착(설치)하는 사업으로, 임대아파트 1동(100 세대)을 대상으로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임. 동 사업 또한 사업 취지나 내용에 대해 이견은 없음.

다만, 사업의 제목인 “저비용·고효율 간편시공 실증사업 추진”으로는 어떤 사업인지 파악하기 어려운바, 창호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목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또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고효율 간편시공 추진”이 신규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동 사업과 거의 유사한 사업이므로,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난방 취약주택 대상 난방효율개선지원단 운영”은 난방 취약주택에 대한 현장 방문 점검과 에너지효율 개선 컨설팅을 통해 주요 설비 점검과 수리 지원, 에너지절약 방법 안내 및 홍보 등을 하는 사업으로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임.

동 사업의 세부 산출내역에 따르면 행사실비 지원금에 진단 컨설턴트의 현장 방문 점검 비용을 인당 5만원으로 책정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사무관리비에 전문가 현장점검 비용을 인당 2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음. 진단 컨설턴트와 전문가의 업무가 크게 다르지 않으나, 현장점검 비용의 차이가 큰 점과 현장 점검 비용의 통계목을 달리 편성한 점은 개선이 필요할 것임.

<난방 취약주택 대상 난방효율개선지원단 운영 사업 세부 산출 내역>

과목구분	산출내역	
행사실비지원금	○ 진단 컨설턴트 현장점검 13,750,000원	= 13,750천원
	증감사유	
	개별난방(공동주택): 2,500천원=25개구×2명×5만원 개별난방(단독주택): 11,250천원=25개구×1명×5만원×9일	
사무관리비	○ 전문가 현장점검 61,000,000원	= 61,000천원
	○ 안전장갑, 홍보물(리플릿)5만부 2000원×150명+4,950,000원	= 7,950천원
	증감사유	
	○ 전문가 현장 방문점검 및 효율개선 컨설팅 - 중앙난방 점검: 6,000천원=3명×10일×200천원 - 개별난방(공동): 10,000천원=25개구×2명×200천원 - 개별난방(단독): 45,000천원=25개구×1명×200천원×9일 ○ 현장점검자 안전장구 및 홍보물 제작	

○ 결론적으로 본 변경안은 제315회 정례회에서 시의회가 승인한 정책사업비 (224억 8천2백만원) 대비 70.3%(158억원, 증액 1건, 신규 15건) 증액분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절차상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효과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임.

다만, 본예산에는 신규사업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금번 변경안에 15건의 신규사업을 편성한 것은, 자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절차가 본예산 심의보다 간소하게 진행되는 점을 악용한 처사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향후 신규사업은 되도록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신규사업이 단년 사업에 그치지 않고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발전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임.